

월별 지방세 안내

| 월별 | 납부할 지방세 |
|-----|---|
|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31.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1.31.까지 |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 및 연세액 일시납부 3.31.까지 - 연세액의 1/4 분할 납부 :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7.5% 공제)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지방소득세(12월 결산법인) 4.30.까지 |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5.31.까지 |
|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6.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5% 공제)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1/2)·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7.31.까지 *주택은 해당연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징수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8.31.까지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나머지 1/2)·토지분 재산세 납부 9.30.까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 9.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2.5% 공제) |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12.31.까지 |
| 매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종업원분) 10일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0일까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0일까지 주행분 자동차세 25일까지 담배소비세 말일까지 |
| 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매분기 익월말일까지 |

이젠! 지방세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 인터넷 납부(365일 연중무휴)**
 -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지방세 납부계좌(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이체 (부산, 국민, 하나, 우체국, 신한, 우리, 농협, 수협)
- ARS 납부 1544-1414(유료)**
 -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국민, BC, 우리, 농협, 씨티카드 가능
- 휴대폰소액결제 납부(10만원 미만, 수수료 있음)**
- 전국 은행 ATM기, 구·군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앱카드 납부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모바일페이 납부**
 - 네이버페이, SSGPAY, L.pay, 카카오페이, 페이코
- 간편결제앱 고지서 송달 신청·납부**
 - 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
- 편의점 납부 CU, gs25(일부 편의점 납부 안 될 수 있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사하구

기업지원을 위한 취득세 안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감면

감면요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 신축,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감면내용

- 신축, 증축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22. 12. 31.까지)
- 대수선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22. 12. 31.까지)
- 신축,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감면요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③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내용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에 대해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는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경감
*2017년 이전 창업기업은 종전규정 적용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에 대해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는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경감
*2017년 이전 창업기업은 종전규정 적용 (5년간 재산세 50% 경감)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구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취득 감면

감면요건

설립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분양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벤처기업을 영위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 제조업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함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감면을

- 취득세 경감(설립자 35%, 분양자 50%)('22. 12. 31.까지)
- 재산세 37.5% 경감('22. 12. 31.까지)

추징요건

설립자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분양자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 사례

- 매각 및 임대(무상임대 포함)
-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사용(무상 및 일부 사용 포함)
- 감면 업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 사용
- 개인이 분양·입주 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사용
- 제조업의 경우 제조시설이 없고 단순 조립·포장하는 경우

